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 명칭

보 험 종 목				
주계약	무배당 더블찬스종신보험	非납입면제형	일반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변액연금전환형	일반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납입면제형	일반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변액연금전환형	일반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 다만, 표준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만15세 ~ 60세		월납
	7년납			
	10년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추가납입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무)추가납입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또한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공제한다.

다.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와는 별개로 (무)추가납입특약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예정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의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누적액」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와 (무)추가납입특약 추가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는 제외) 총액의 100%(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하다.

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가’ 및 ‘나’의 적용이율이란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계약 체결 시점)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및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다만,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한 금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납입액과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중도인출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 가능하다.

- (1)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
- (2)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 가능)
- (3)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 가능)

라. '가'에서 '다'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주계약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계약 보너스 발생후적립액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전부 인출할 수 있다.

마. 중도인출 이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용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보험료 납입 시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가 우선 납입이 된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의 합계액을 말한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가'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6.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한다.

17.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나'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한다.

마. '나'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8.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다음의 「납입완료보너스」를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에 가산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가산한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text{납입완료보너스} = \text{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text{납입완료보너스비율} \times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나. 납입완료보너스비율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완료보너스비율
非납입면제형	5년납	7.0%
	7년납	8.4%
	10년납	24.3%
납입면제형	5년납	7.2%
	7년납	8.5%
	10년납	23.7%

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한다.

19.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유지중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다음의 「버팀목자금」을 「보너스 발생후적립액」에 가산한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버팀목자금을 가산한다. 다만, 버팀목자금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text{버팀목자금} = \text{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text{버팀목자금비율} \times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가. 버팀목자금비율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버팀목자금비율
非납입면제형	5년납	14.8%
	7년납	14.9%
	10년납	-
납입면제형	5년납	15.3%
	7년납	15.3%
	10년납	-

- 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버팀목 자금을 계산한다.
- 다.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버팀목자금」을 「보너스 발생 후적립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20.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1구좌): 1,000만원

나.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전환시점의 피보험자 나이를 적용한다.
- (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래의료기술선택특약의 가입은 신청할 수 없으며,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다.

다.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전환시점의 피보험자 나이를 적용한다.
- (2)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으며,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미래의료기술선택특약의 가입은 신청할 수 없다.
- (3)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은 변액연금전환형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 일반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
- (4)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신청시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의 피보험자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라. 미래의료기술선택서비스특약에 따라 미래의료기술선택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의료기술선택특약은 중도부가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중도부가시점의 피보험자 나이를 적용한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계약 및 주계약의 전부를 저축성 계약(무배당 신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전환특약 등)으로 전환한 계약은 중도부가를
신청할 수 없다.

마. 사망보험금 지급의 특례조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
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더블찬스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은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남자, 40세, 7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구분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표준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아래 옆게 인쇄된 부분은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무)더블찬스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설계사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서명)

친권자 [] (인/서명)

친권자 [] (인/서명)